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 사전예고

- 1. 규정의 명칭
- □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
- 2. 규정 변경의 취지
- □ 상위규정(은행업감독규정) 개정 사항^{*}을 반영하여 관련 업무보고서 서식 등을 정비할 필요
 - * 예대율 산정방식 관련 총 3건의 개정사항을 반영('22.5월, '22.11월, '22.12월 시행)
- 3. 규정 변경 내용(세칙 별책서식 <제57호>)
 -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규제* 단계적 정상화('22.5.1 시행)
 - * '22.4월말까지 취급된 가계대출에는 100% 가중치를 적용하고, '22.5.1일 이후 취급분에는 115% 가중치를 적용('25.5.1일 이후에는 '22.5.1일 이전 취급분에도 115% 적용(일반은행과 동일)

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예대율 가중치

	′22.5.1일 이전	′22.5.1일 이후 3년간	3년 이후
가계대출	100%	신규 취급분: 115%	115%
	(기업대출 취급시 115%)	기존 취급분: 100%	
중소기업	- (기업대출 취급시 85%)	85%	
개인사업자	- (기업대출 취급시 100%)	100%	

- ② 예대율 산정시, 한국주택금융공사의 「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」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('22.11.23 시행)
- ③ 예대율 산정시, 정부·한국은행 등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총 **11종의 대출*을 제외**('22.12.21 시행)
 - *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마~거목의 대출
- 4. 기타 필요사항 : 없음

5. 의견 제출관련사항

□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앞으로 서면(문서, 팩스, 컴퓨터 통신 등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의견제출자 개인성명 또는 단체이름	
주소	
연락처	
의견내용	
의견제출의 근거	

- ※ 의견제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의견제출시한(도착기준) : **2023년 1월 17일(화요일)** (20일간)
- 6. 접수부서, 담당자, 전화번호, 팩스번호 등
 - □ 은행감독국 <u>건천경영팀</u> 선임조사역 <u>장정수</u> (전화: 02-3145-8052 팩스: 02-3145-8038, e-mail: jschang@fss.or.kr)
- ※ (붙임)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붙임

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1.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본문 개정

현 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부칙 <2023. 1. 00.>
	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3년 1월 00 일부터 시행한다.
	제2조(적용례)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는 2022년 12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.

2.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<별책서식> 제57호 개정

현 행	개정안	비고
원화예대율(B2613)	원화예대율(B2613)	서식 개정

※ 별첨 : 은행 업무보고서 개정(안)